

[협력사ESG방침]

본 <협력사 ESG 방침>(이하 '가이드라인')은 협력사를 포함하여 금호미쓰이화학과 공급망에서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이하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가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원칙과 표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협력사에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통과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급망 전반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며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금호미쓰이화학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사와 그 구성원입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신규 협력사와의 계약 시 업체가 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협력사는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할 것이 권장됩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주기적인 공급망 ESG 평가를 통해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리스크가 식별될 경우 완화예방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합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본 가이드라인의 충실한 준수와 이행이 공급망 전체에서의 동반 성장을 달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정일 2024년 6월 30일

협력사ESG방침

1. 제 1장 노동 인권

가.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폭언과 폭력, 성폭력과 같은 정신적육체적 강압 행위, 차별과 괴롭힘 등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이에 대한 위협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해당 상황의 발생 시 이를 해소하고 개선하며, 대상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합당한 제재 조치와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근로자에게 소통한다.

나. 자발적인 취업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취업을 보장한다. 이는 강제 노동, 담보나 계약에 묶인 노동, 인신매매, 착취적 징역 노동과 현대판 노예 제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비자발적 노동에 대한 금지를 의미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여권, 신분증 및 근로허가증 등 법정 발급 신분이민 증명서 및 문서를 자의적으로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 조건을 포함한 계약서는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작성하며,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 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다.

협력사ESG방침

1. 제 1장 노동 인권

다. 아동 노동 및 연소자 노동

금호미쓰이화학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의 경우 15세 미만, 중국의 경우 16세 미만인 연소자의 노동은 아동 노동으로 간주하며, 이 밖에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아동 및 연소자 노동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며, 금호미쓰이화학의 이와 같은 아동 노동을 모든 근로 단계에서 배제합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야간근무 및 유해물질의 취급 작업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 수행을 금지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모든 연소자·학생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라. 근로 시간의 준수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최대 시간(국내 근로기준법 기준 주 평균 40시간. 다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은 주 최대 48시간,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 허용)을 초과할 수 없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에서 수행되는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에 따른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복리 후생과 급여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현지법에서 규정하는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임직원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임금 수준을 책정하여야 한다.

바. 차별 금지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채용, 급여 및 보상 제공, 승진 등의 인사상 전 과정에서 인종, 피부의 색깔,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종교, 성별, 혼인 여부, 장애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차등 대우 또는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협력사ESG방침

1. 제 1장 노동 인권

사. 집회 결사의 자유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노동조합의 결성참여에 대한 권리, 집단 교섭권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거나 그러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가 근무 조건 또는 경영 관행에 대해 괴롭힘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 2장 산업안전보건

가. 산업 안전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감전, 화재, 위험시설이나 차량, 추락 등 안전 위험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가 파악될 경우, 설비 개선 및 정비, 관련 교육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그 위험 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근무에서 배제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 또는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비상 상황 대응·대비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잠재적인 비상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와 비상 대책을 이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비상 대책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비상 상황 예방을 위한 근로자 비상 대피 훈련 및 교육, 어려움 없이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 사태 계획과 대응책 등이 포함된다.

다. 산업재해 및 질병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업무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와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한 의료 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활성화 규정이 포함된다.

협력사ESG방침

2. 제 2장 산업안전보건

라.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저감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작업 공정 중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수준 내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교정,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 법적·제도적 요건에 따른 행정적 통제를 통해 상기 유해요인들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신체 부담 업무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장시간 수행되는 반복적인 수작업,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 등 육체 노동과 관련된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적정 수준 내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바. 기계 설비의 안전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류의 사용에 있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설치하고 적절히 정비한다.

사. 기숙사 및 위생 시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 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과 함께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아. 근로자 소통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확인된 산업안전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의 업무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 안전 정보는 근로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자가 관련 위험 요소를 파악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력사ESG방침

3. 제 3장 환경

가. 환경 인허가 취득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사업 활동에 요구되는 환경 관련 인허가,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금호미쓰이화학에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오염 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대기·수질·토양오염물질에 대해 배출 이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고 배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원 제어 설비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적절한 수단과 책임 있는 방식을 통해 처분 또는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원부자재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배출, 재활용재사용 현황 및 오염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공정 과정에서 투입되는 원부자재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물질은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물질 규제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관계 법령과 이해관계자의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사항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수자원 관리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취수원, 사용처별 수자원의 사용 및 재사용률 현황을 파악하여 그 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폐수는 방출 전 적절한 처리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하며, 폐수 처리 억제 설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효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협력사ESG방침

3. 제 3장 환경

바.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에 기반하여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2)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실적을 추적이 가능하도록 집계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 친환경 구매·조달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물품의 우선적 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 친환경 물품의 정의는 금호미쓰이화학의 『공급망ESG정책』 제6조.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에 명시된 분류 체계를 준용한다.

4. 제 4장 경영 윤리

가. 투명·윤리경영 및 부정·불공정경쟁 방지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합니다.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횡령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사업권의 획득 및 보유, 특정인에 대한 사업권의 부여 등,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하지 않는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협력사의 임직원은 개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이해에 반하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시장지배 지위 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협력사ESG방침

4. 제 4장 경영 윤리

나. 정보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기존 정해진 목적과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의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의 정보를 계약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보관·사용하지 않으며, 영업 비밀 또는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 책임 있는 구매·조달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당사에 공급하는 물품의 공정 과정에 투입된 원부자재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구매·조달받는 원부자재에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와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산림의 전용 및 황폐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부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원산지와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정보 공개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사업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5. 제 5장 관리 시스템

가. 협력사의 준수 의지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요구 또는 권고하는 사항에 대한 준수와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자사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정책 성명서로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현지어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 권장된다.

협력사ESG방침

5. 제 5장 관리 시스템

나. 추진 체계

정책 성명서에는 지속가능성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과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최고 책임자를 명시한다. 해당 최고 책임자는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 사항에 대한 금호미쓰이화학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 또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행 활동에 따른 성과와 실적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 리스크 점검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관련 법/규제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상기 영역에서 중대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였을 경우 이를 완화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소통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금호미쓰이화학이 제공하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추진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사업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본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가 요구 또는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요구 또는 권고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성과와 실적을 임직원과 금호미쓰이화학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사회·환경·경영 윤리 영역별 성과, 실적 및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금호미쓰이화학과 투명하게 소통하여야 한다.

마. 고충처리 메커니즘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노동 관행, 산업안전보건, 부패 또는 불공정·부정경쟁 리스크 등의 영역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신고 창구를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마련하여, 자사와 거래 기업의 근로자 등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고충처리 창구를 익명으로 운영하며, 신고자가 보복 또는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창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접수된 사안을 충실히 처리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하도록 노력하며,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 전달하여야 한다.

협력사ESG방침

5. 제 5장 관리 시스템

바. 구제 수단 마련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가 사업 활동으로 인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 감사 및 평가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금호미쓰이화학이 실시하는 공급망 ESG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금호미쓰이화학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망 ESG 평가에서 파악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아. 협력사 관리

금호미쓰이화학은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가 자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에서 본 가이드라인 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 또는 권고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리스크를 야기하였을 경우, 금호미쓰이화학의 협력사는 해당 협력사에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일 2024년 6월 30일

최종 개정일 2025년 7월 31일